



GLOBAL DATA ALLIANCE

TRUST ACROSS BORDERS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The Global Data Alliance (GDA)¹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BSA | The Software Alliance의 회원사들은 개정안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GDA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GDA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제조 및 농업 부분부터 스타트업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와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혁신과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통해 모든 국가에서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며 생산성 역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디지털 기술과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²

GDA 회원사들은 오늘날의 국경을 넘어선 경제활동이 소비자 및 일반 대중의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걸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깊고 오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GDA는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D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국내외 단체에 개인정보를 책임감 있게 이전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혁신적인 법적 규범을 채택하시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촉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원활한 국외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를 뒷받침 하는 현대적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모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란 AI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 기술과 같은 개인정보 이전으로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는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국외에서 열람되거나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원격 작업 및 가상 협업,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사이버 보안, 부정 행위 모니터링 및 방지, 자금세탁 방지, 조사 등 많은 중요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건강, 프라이버시, 보안 및 지적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기타 활동들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전자, 자동차, 조선, 통신, 미디어 및 콘텐츠 유통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선진 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¹ The Global Data Alliance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책임 및 보호에 전념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교차 산업 연합체로, 전 세계적인 개인정보 이전 기술을 통해 산업을 혁신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GDA는 거래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현지화 요구 사항을 지양하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에 신뢰를 심어주는 정부의 정책들을 지원합니다. GDA 회원사: BSA 회원사, American Express, Amgen, AT&T, Citi, ITB360, LEGO, Mastercard, Medtronic, Panasonic, Pfizer, RELX, Roche, United Airlines, Verizon, Visa, UDS Technology, and WD-40 Company. BSA에서 Global Data Alliance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GD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globaldataalliance.org/downloads/aboutgda.pdf>

² GDA 논문 "The Cross-Border Movement of Data: Creating Jobs and Trust Across Borders in Every Sector"
<https://www.globaldataalliance.org/downloads/GDAeverysector.pdf>.

한국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국제 규범과 상호 운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전향적 정책은 정부, 기업, 소비자 및 사회에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며 기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책임 소재 모델과 개인정보의 국제 이전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사회 글로벌 경제에서 활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책임감 있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DA는 개인정보의 국제 이전에 대한 책임 소재 모델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OECD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에 많은 법률 시스템과 보호 원칙에 승인되고 통합된 바 있습니다. 책임 소재 모델은 개인의 사생활과 소비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종종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됨)이 어디에서든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강력한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국제 이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해 올바른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협은 데이터가 저장 또는 처리되는 물리적 위치 또는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시스템·절차 등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의 책임 있는 처리와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면서 국외 이전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호 정책과 규제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유지되는 방식, 제어 장치의 품질과 효과에 맞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 모델은 개인정보가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요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GDA는 제 28 조의 8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외 이전 방식을 제공하는 본 개정안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DA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긴 정보 목록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28 조의 8 제 3 항을 삭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조항에는 국외이전 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시기·방법,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받는 자의 성명,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거부방법 및 절차 등 정보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적 요구사항은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줍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이전 방식, 이용 일시 등 리스크가 동반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연락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와 교류를 제한하고, 보안상의 문제를 대처 할 때나 서비스의 중지 사태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빠른 시간 내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와 함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GDA는 제 28 조의 8 제 3 항의 요건을 삭제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대신,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회사는 해당 데이터가 한국의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접근, 정보, 삭제, 수정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요청을 처리할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대체 고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유연성과 상호운용성

국제 합의 기반 원칙에 기초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의존할 수 있는 국제적 상호운용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촉진하여 지역 시장에 대한 혁신과 사업 투자를 촉진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간 프라이버시 규범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민간 행동 양식 (code of conduct), 표준 계약 조항과 같은 계약상 APEC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BPR), 유럽연합(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의 적합성과 같은 상호 인식 약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GDA는 제 28조 8 제 2항에 여러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추가 이전 방식을 포함해 이전 방식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창출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확장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확장된 접근 방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가장 최적화되고 관련성이 높은 이전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GDA는 아래 사항들에 대해 고려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 **제 28조의 8 제 2항 개정을 통해 다른 국외 이전 방식들도 함께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외 이전 방식들이라 함은, 국외 이전을 지원하는 기업 내 바인딩 규칙, 국제적 신뢰 마크, 타 국가 인증 및 계약 약정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전 방식들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APEC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BPR), 유럽연합(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외이전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글로벌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 28조의 8 제 2항 개정을 통해 동의 조건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별도의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의 동의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GDA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당초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로 국외 이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의견서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다음을 고려하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력한 데이터 보호와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와 경제에 지속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unice Lim
Senior Manager, Policy – APAC
BSA | The Software Alliance